

#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-15호

## 행정처분 사전통지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(舊「건설기술관리법」)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 
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24일  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### 1. 대상

| 성명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|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박○현 |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이하 생략 | 업무정지 6개월<br>(근무경력 거짓 신고) |

### 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

| 성명  |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박○현 | 근무경력 거짓 신고<br>- 토평초등학교 시설개선공사(2014.7.21.~2014.9.5.) 등 2건 |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<br>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[별표1] |

### 3. 의견제출

- 제출기한 : 2024. 2. 9. (금)
- 제출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 
연락처 : 02-2110-6725 / 팩스 : 02-2110-0682 / 전자우편 : leey051@korea.kr
- 제출방법 :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(의견제출서)

### 4. 안내사항

-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 
의견이 없는 것으로(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)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(02-2110-672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